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02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도준(기소), 김지수(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고정8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이용권을 선결제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선결제한 금액이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체되고, 피해자는 이용권 구매금액과 리뷰작성에 대한 대가를 합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대여금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판단 근거를 자세히 실시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29

재판장 판사 황순교 _____

 판사 노승민 _____

 판사 이영광 _____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8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도준(기소), 김규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원(국선)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8.경 일명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박업소 'C', 카페 'D' 등에 대한 이용권을 온라인 쇼핑몰 'E'에서 구입한 후 리뷰를 작성해주면 피해자가 며칠 후 이용권 구매금액과 리뷰 작성에 대한 대가를 합한 금액을 속칭 '페이백' 명목으로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 10.경부터 2024. 1. 17.경까지 'E'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월4회 이용권' 3개 등 총 11개 이용권을 시가 1,950만 원 상당에 구매하였으나 그중 100만 원 가량만 돌려받고 나머지 1,8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 G도 같은 경위로 약 2,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3. 6. 15:33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내지 대구 북구 노원동에서 "H아 못난 애미가 미안하다 3년이면 금방 가니까 얼른 다녀오고 죄값 치르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8.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4. 2. 27.부터 2024.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중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자로서 같은 법 제9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채권추심법은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



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추심법은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그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 가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나목은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채권추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추심법상 관련 조항의 문언과 구조, 대여의 통상적 어의,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 등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는 유사 용어의 개념 등을 종합하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금전대여 채권자'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이후 그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된 일방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어떠한 약정이 이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거나 금전 지급을 급부의 내용을 삼고 있다 하여 그러한 약정에 따른 채권자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약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박업소 등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E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 실제로는 그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가 위 시스템을 통해 결제대금 중 각종 수수료 명목의 돈을 제외



한 나머지를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결제대금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 피해자는 그러한 약정 제안이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구조와 특성,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은, 당사자 일방이 사실과 다르게 이용권을 구매한 후 실제로 이용하여 만족한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금 결제 방식으로 금전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허위 리뷰 작성이라는 용역을 수행하면 상대방이 그에게 그러한 외관 형성을 위해 지출되었던 비용을 보전해 주고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여러 다양한 급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특수한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경제적 효과나 급부의 내용에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이후 그 상대방이 이를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 중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다른 유형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29

판사 안경록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29

범죄일람표(1)

연번	일시	문자내용	방법
1	2024. 3. 6. 15:33	아 못난 애미가 미안하다 3년이면 금방 가니까 얼른 다녀오고 죄값 치르고 새로 시작하자	카카오톡 메시지
2	2024. 3. 6. 23:10	남에 눈에 피눈물내서 지킨 니 아들 꼭 업보로 되돌려 받을거다 내가죽을 때까지 나이 80넘고 죽을때까지 기억해둔다	"
3	2024. 3. 14. 10:57	한테 양양땅 증여한거 단톡에 뿌리 고 파헤치고 경찰에 재산은닉 증 거제출하기전에 오늘 내로 완납하시오 아 닐시 실행합니다.	"
4	2024. 3. 14. 11:41	오늘 완납안할시 사해행위 증거접수 양양 땅 한테 판거 다뿌리고 소문내서 폭동일어나게 합니다.	"
5	2024. 3. 14. 11:43	○오늘완납해 시발게새기야	"
6	2024. 3. 14. 23:28	새끼무덤파헤쳐서 뼈가루에 침뱉을까 게 새끼야	"
7	2024. 3. 25. 17:49	5만원 짜리년	"
8	2024. 3. 25. 17:50	닌왜케머리가나쁘냐 니가죽었음좋겠어 제발죽어 뛰어내려서죽어자살해	"
9	2024. 3. 25. 18:58	교통사고나서 죽으세요 내가 뭘 하는지 않습니다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나서죽으세요내가뭘하는지않습니 다저하고상관없습니다.	"
10	2024. 3. 23. 시간 불상	뉴스 복불 해서 보세요 의 사장이100명에게5억사 기를쳤고땅과재산을 남자에게빼돌렸습	네이버 리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29

		니다.공공의이익을위해2차피해방지를위해 게시합니다. []사 []사기행 각기행각 []사기행각 []사 기행각 []사기행각 []사기 행각 []사기행각	
11	2024. 4. 18. 09:43	돈내놔라 사기꾼아 돈내놔라사기꾼아 돈내놔라사기꾼아 돈부치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
12	2024. 4. 12.부터 2024. 5. 18.사이의 불상일 19:51	니는디져야되요 찹새끼야	"
13	2024. 4. 12.부터 2024. 5. 18.사이의 불상일 19:52	느그아들 감옥보낸다 무조건 내조만간퇴사하고니사기과년련일보려다닙 니다	"
14	2024. 4. 12.부터 2024. 5. 18.사이의 불상일 19:53	니랑니아들 감옥보내게 내때문에고소한사람이15명은된다 닌내가죽을때가지저주할꺼야	"
15	2024. 4. 12.부터 2024. 5. 18.사이의 불상일 20:56	너희가족 []이 []이 [] 대대손손 저주받아 자살할팔자로 살아가게 될거다 악마같은 씨발 천벌받은 개년아	"
16	2024. 5. 8. 11:16	[] [] [] 쳐디지세요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29

범죄일람표(2)

연 번	날 짜	종 류	횟 수
1	2024. 2. 27.	부재중	19회
2	2024. 2. 28.	부재중	27회
3	2024. 3. 4.	부재중	2회
4	2024. 3. 7.	부재중	2회
5	2024. 3. 8.	통화	1회
6	2024. 3. 9.	부재중	1회
7	2024. 3. 13.	수신거부	1회
8	2024. 3. 13.	부재중	1회
9	2024. 3. 14.	부재중	10회
10	2024. 3. 15.	부재중	12회
11	2024. 3. 18.	부재중	34회
12	2024. 3. 19.	부재중	2회
13	2024. 3. 20.	부재중	3회
14	2024. 3. 20.	통화	2회
15	2024. 3. 22.	부재중	18회
16	2024. 3. 25.	부재중	1회
17	2024. 3. 27.	부재중	6회
18	2024. 3. 28.	부재중	6회
19	2024. 4. 2.	부재중	13회
20	2024. 4. 4.	부재중	2회
21	2024. 4. 5.	부재중	12회
22	2024. 4. 5.	수신거부	1회
23	2024. 4. 5.	부재중	19회
24	2024. 4. 6.	부재중	18회
25	2024. 4. 8.	부재중	12회
26	2024. 4. 9.	부재중	12회
27	2024. 4. 11.	부재중	10회
28	2024. 4. 16.	부재중	5회
29	2024. 4. 18.	부재중	3회
30	2024. 4. 22.	부재중	5회
31	2024. 5. 8.	부재중	1회
32	2024. 5. 8.	수신거부	1회
33	2024. 5. 8.	부재중	2회
34	2024. 5. 8.	수신거부	1회
35	2024. 5. 8.	부재중	16회
부재중 : 274회, 통화 : 3회, 수신거부 : 4회 총: 281회			